집중수업 운영 규정

제정 2020. 08. 13.
1차 개정 2022. 04.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집중수업 운영 및 학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집중수업"이란 통상적으로 과목별 수업일수를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운영하는 수업과는 달리, 개별 교과목별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수업을 말한다.
② "집중수업 과목"이란 집중수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③ 계절학기 개설과목과 현장실습은 본 규정의 집중수업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3조(수업개설) ① 집중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무연구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4.20)
② 집중수업 개설 시기는 정규학기 중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③ 집중수업은 3~4학년 대상 전공과목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4조(운영방법) ① 집중수업 과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목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과 수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강의시간표를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집중수업 과목의 담당 교원은 수업계획서를 통해 집중수업 임을 안내하여 수강신청자들의 수업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집중수업 과목 일지라도 수업계획서에는 강의내용이 15주차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④ 집중수업 기간에 속한 휴일에 대해 대학이 지정한 보강일에 보강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일을 다르게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집중수업 운영학과의 학과장은 집중수업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출석부를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표1〕를 교무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0)
⑥ 단기간 집중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사위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⑦ 집중수업의 기간이 학기 종강 전에 종료되더라도 성적처리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학사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제5조(강의시수 인정) 집중수업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강의시수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제6조(강의료 지급) 집중수업 교과목의 강의료는 운영기간과 관계없이 15주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강의평가 및 성적평가) ① 강의평가 및 성적평가 방법은 본 대학교 제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 및 성적평가 기간은 본 대학교 학사일정에서 정한 기간을 따른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관련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기획예산팀-514, 2020. 08. 13.)
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257, 2022. 04. 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집중 수업 개설신청서

<table>
<tr><td>대학명</td><td colspan="2"></td><td>학과(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학년</td><td rowspan="2">교과목명</td><td rowspan="2">학점</td><td colspan="2">시수</td><td rowspan="2">담당교수</td></tr>
<tr><td>이론</td><td>실습</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집중 강의
목적
(개설사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집중 강의
신청 내역</td><td colspan="2">시간</td><td colspan="3">기간</td></tr>
<tr><td colspan="2">예) 9.18(월) 5~8교시</td><td colspan="3">예) 4주, 8주 12주 등</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추진내용
및 방법</td><td colspan="5">붙임 : 일정표, 수업계획서</td></tr>
<tr><td>집중수업의
기대 효과</td><td colspan="5"></td></tr>
</table>

집중수업운영규정 제3조 1항에 따라 20 년 학기 집중이수제 교과목으로 위와 같이 개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과장 : (인)

학 장 : (인)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 1. 학과 회의록(교수·학생(대표) 간담회 등) 1부.
2. 일정표 1부.
3. 수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집중수업 자체평가 보고서

1. 집중수업 총괄 현황

교과목명	강의실	집중수업기간	학년	참여학생	내역	비고

2. 집중수업 수업내역(시간대별)

일자	시간	수업내용	담당교수	비고

3. 집중수업 자체 평가

1. 전체내용(수업계획서 상의 수업 목표와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2. 학생 만족도(학생들의 집중수업에 대한 의견을 반영)
3. 건의사항
4. 기대효과(집중수업으로 진행했을 시의 장점 등을 포함)

학 과 장 : (인)

학 장 : (인)

붙임 : 1. 시간표 1부.

2. 집중수업 진행 사진 1부.

〔별표 1〕

집중수업 진행 사진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 일자별로 수업진행 사진 1장 이상 첨부